

표창심사기준

가. 공로상 심의방법

- 1) 개인 및 단체의 특별찬조 및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.
- 2) 지회 수여방법은 각 지회 순번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수여한다.

나. 학술상 심의방법

- 1) 5년 이내 5점 이상 해당자(단, 7년 이내에는 재 수상 할 수 없다)
논문 및 저서 점수 계산 : 1인 1점, 2인 0.7, 3인 0.5, 4인 0.4, 5인이상 0.3 (저서 번역시 50%)
- 2) 부 교수 급(선임연구원)이상에 준하는 자
- 3) 학위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학회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.
- 4) 학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예로운 학회상이며, 해당자가 없을 때는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.

다. 논문상 심의방법

- 1) 논문상으로 하되 특별히 우수한 논문일 경우 논문대상으로 할 수 있다.
- 2)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된 논문 중에서 상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라. 학술대회 발표상 심의방법

- 1) 학술대회 발표원고 4편당 1편(구두발표 2편당 1편)의 우수추천 논문을 선정한다.
- 2) 우수추천논문 4편당 1편의 학술대회 발표상을 선정한다.

마. 기술상 심의방법

- 1) 접수된 추천서 내용을 심의 후 특별회원중에 학회 공헌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다.
- 2) 신기술·우수제품 전시회 참여업체 중에서 학회 공헌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다.

바. 특별상 심의방법(신설)

- 1) 특별상의 종류(공로상, 학술상, 기술상, 논문상)별 기준에 따라 위원회, 연구회, 편집위원에서 추천하여 상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사. 우수편집인상 심의방법(신설)

- 1) 논문지 발행을 위한 심사위원 등 공헌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다.
- 2) 학회지 발행을 위한 원고 집필 등 공헌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6년 10월 09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4년 09월 03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(바).
3.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(사).